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

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

◎ 지원대상(기업)

-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이하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)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**의 사업주 (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 제외)

* 다만,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,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◎ 지원대상 : 청년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)

▷ 공통충족사항
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-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(취업애로청년)
- 근로조건 등
 -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 -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 -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
- 학력: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 (졸업예정자 가능)
- 군필자: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
▷ 특례사항

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
-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
◎ 지원제외대상 : 청년

-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-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 제1항,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예외 조항 있음)
-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
-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
◎ 지원기간

-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(22년 1월 이후 채용자)
- *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,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
- ** 채용일은 '22.1.1.~'22.12.31.이어야 함
- *** 다만,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'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

◎ 지원한도

-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(최대 30명)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◎ 지원수준

-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, 1년 최대 960만원 (최대 12개월 지원)

*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음

**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,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

*** 단,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◎ 지원제한

- 참여 청년이 채용 후 6개월(최소 고용유지 기간)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- 참여 청년이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,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,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

-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,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(최대 12개월)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

◎ 신청방법

「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」(www.work.go.kr/youthjob)을 통해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로 지정하여 참여 신청

* 참여 신청 이전(3개월 이내)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◎ 지원금신청

-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후,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

: 2~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,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, 10개월,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*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

-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(고용조정 이직)이 없어야 함

◎ 문의 (원주상공회의소)

담당자 연제영 대리, 정유식 사원, 신정원 사원

전화 743-2991~4

팩스 473-2995